공화국민법에 규제된 허위적인 행위와 그 법적효과

최 주 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를 속이고 허위적인 결제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를 엄격히 세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전집》제9권 292폐지)

국가를 속이고 허위적인 행위를 하는 현상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엄격히 문제를 세우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허위적인 행위와의 투쟁을 강화하자면 그에 대한 법적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사람들 속에서 그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허위적인 행위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허위적인 행위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다.

공화국민법전 제26조 해석에서는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의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진실한 의사가 없이 순전히 겉으로만 하는 행위 즉 행위자의 의사표시와 진실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허위적행위를 하기로 상대방과 미리 약속하였거나 약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를 할 때 상대방의 허위성을 알고 행위를 하여도 무효로 인정된다고 규제하였다.

허위적인 행위란 법률행위의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진실한 의사가 없이 순전히 겉으로만 하는 행위 즉 행위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행위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것은 행위자의 법적결과발생을 목적한 의사와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것을 말한다.

의사는 행위자의 주관적의도이다. 즉 의사는 자기가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며 그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겠는가에 대한 당사자자신의 주관적의도를 말한다.

표시는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것이다.

당사자들은 일정한 법적결과를 목적한 의사에 기초하여 표시를 하게 된다. 즉 의사와 표시는 일치되는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고의나 부주의로 또는 사기나 강요 와 같은 객관적요인으로 하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될수 있다.

당사자들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는 행위들을 공화국민법에서는 구체적으로 허위적인 행위, 본질적착오를 범한 행위, 사기당한 행위, 강요당한 행위로 구분하고있다.

허위적인 행위는 당사자들의 사전공모로 의사와 표시를 불일치시키는 행위, 진실한 의사가 없이 하는 행위이다. 당사자들이 사전공모로 자기들의 의사와 표시를 불일치시키 는 근본요인은 국가의 법을 어기려는 위법적인 의사를 숨기려는 목적이다.

허위적인 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은 국가의 법을 어기려는 목적밑에 사전에 공모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의식적으로 표시와 불일치시킨다. 현실에서는 허위적인 행위가 보편적으 로 이와 같이 나타난다.

공화국민법에서 허위적인 행위를 무효한 민사행위의 한개 형태로 규정한것은 위법적인 행위를 은폐하려는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허위적인 행위는 본질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위법적인 의사를 은폐하려는 의도밑에 사전공모하여 합법적인 형식으로 하는 행위이다.

허위적인 행위는 본질로부터 그것이 다른 민사행위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허위적인 행위의 특성은 우선 당사자들이 의식적으로 의사와 표시를 불일치시키는 행위이라는것이다.

외부적요인이나 당사자들의 부주의에 기초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는 달리 허위적 인 행위에서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한 불일치이다.

본질적착오를 범한 행위와 사기당한 행위에서 당사자자신은 행위수행당시 자기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된다는것을 모른다. 강요당한 행위에서도 당사자는 상대편당사자의 강요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 표시를 마지 못해 할수 없이 불일치시키게 된다.

허위적인 행위는 당사자들이 부주의적으로나 외부적요인에 의하여 의사와 표시를 불일치시키는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불일치시킨다.

허위적인 행위의 특성은 또한 위법적인 의사를 은폐하려는 당사자들의 사전공모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라는것이다.

본질적착오를 범한 행위나 사기 또는 강요당한 행위는 한쪽 당사자의 본질적착오나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하여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며 여기에 당사자들의 사전공모란 존재하 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적인 행위는 행위를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위법적인 의사를 은폐하기 위한 사전공모에 기초하여 의사와 표시를 불일치시킨다.

행위수행당시 상대방의 허위적인 행위에 대하여 알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사전 공모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사전에 허위적인 행위를 할데 대한 공모를 한것이나 행위수행당시 상대방의 허위적행위에 대하여 알고 행위를 한것이나 당사자들의 해당 행위의 결과에 대한 주관적의도는 같기때문이다. 즉 해당 행위에 그들의 진실한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해당 행위가 위법적인 의사를 은폐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미리 예견하였다는것이다.

허위적인 행위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허위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효력과 효과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다.

공화국민법 제26조, 제27조 해석에서는 허위적인 행위의 법적효력과 효과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공화국민법에 의하면 허위적인 행위는 효력에 있어서 당연히 무효로 된다.

허위적인 행위가 무효라는것은 허위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말한다.

허위적인 행위가 무효로 되는것은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진실한 의사가 없이, 더우기는 위법적인 의사에 기초한 사전공모로 행위를 하기때문이다.

민법은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자들사이의 재산관계를 자기의 규제대상으로 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들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재산상리익이나 손해를 자신의 의사와 책임밑에 부담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므로 일단 이루어진 재산거래는 민사거래의 정상성,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들의 진실한 의사를 반영한것으로 보고 철저히 유지공고화시키는것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일단 이루어진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면 민사거래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해당 민사거래에 대한 정확한 리행의사를 가지지 않게 되며 민사거래의 정상성, 안정성을 보장할수 없기때문이다.

당사자들의 행위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인 경우로 갈라 무효 또는 취소시키도록 하는것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공화국민법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실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취소할수 있는 민사행위와 무효한 민사행위들로 갈라서 구체적으로 규제하였다.

당사자들의 진실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행위들에는 구체적으로 본질적착오를 범한행위, 허위적인 행위, 사기당한 행위, 강요당한 행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효로 인정되는 민사행위는 바로 허위적인 행위이다.

당사자들의 진실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행위들가운데서 허위적인 행위만이 무효로 인정되게 되는것은 그 행위가 당사자들의 위법적인 의사를 은폐시키려는 목적의식적인 의사불일치로 진행되기때문이다.

허위적인 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은 해당 거래를 진실한 의사가 없이 순전히 겉으로만 하며 그들의 진짜목적은 국가의 법적제재를 피하려는것이다. 즉 당사자들은 국가의 법을 위반하려는 의사밑에 행위를 한다.

허위적인 행위는 국가의 법을 위반한다는것을 알면서 사전공모하여 행위를 하였다는데 그 위법성이 있으며 이것은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는 행위로 된다. 따라서 공화국민법에서는 허위적인 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규제하고있다.

허위적인 행위는 무효한 행위로서 해당한 법적효과가 발생한다.

공화국민법에서는 무효한 행위들에 대하여 원상회복이나 몰수적효과 두가지를 예견 하고있다. 원상회복은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 시키는것을 말하며 몰수는 거래에 쓰인 재산을 국가소유로 만든다는것을 말한다.

공화국민법에서 무효한 행위들에 대해서 원상회복이나 몰수적효과 두가지를 예견하고있는것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그것이 사회에 주는 영향과 위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같은 무효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면 거기에 법적제재를 가하여 그러한 행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극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재산몰수는 공화국민법에서 예견한 법적제재에서 기본이다.

무효한 행위들가운데서 몰수적효과가 발생하는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들이다.

공화국민법에서는 허위적인 행위에 대하여 몰수적효과가 발생하는것으로 규제하고있다. 즉 허위적인 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재산은 몰수되게 된다.

공화국민법에서 이러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킬것을 규제하고있는것은 허위적인 행위에 당사자들이 국가의 법을 어기려는 위법적인 의사가 있기때문이며 당사자들이 그러한 의사밀에 사전공모하였기때문이다.

당사자들이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허위적인 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국가의 법을 어기려는 범죄적의사가 있는것으로 하여 응당 해당한 법적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그래야 그들이 앞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극을 받게 되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공화국민법에서는 허위적인 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재산은 몰수하는 제재적효과를 발생시키고있다.

허위적인 행위의 법적효과로서의 몰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문제들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선 위법적거래에 대하여서는 계약(합의)의 전량을 몰수하는것이 아니라 이미 리행한 량만큼 몰수한다.

위법적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으로 공모하였던 전량을 몰수하는것이 아니라 이미 리행한 량만큼 몰수하는것은 허위적인 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에게 재산적손해를 발생시키 는 허위적인 행위를 중도에서 단념하도록 자극하자는데 있다.

허위적인 행위를 하던 당사자들은 재산몰수를 당하면 자신들의 위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적손해를 자신들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손해를 더이상 보지 않으려고 하며 허위적인 행위를 중도에서 그만두게 된다. 그리고 이미 몰수당한 재산적손해를 부담하면서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허위적인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강한 자극을 받게 되는것이다.

또한 한편 당사자만이 계약을 리행한 경우 리행한것과 리행받은것으로 하여 상대편 당사자가 응당 리행하게 된것까지 몰수한다.

한편 당사자만이 계약을 리행한 경우 리행한것과 리행받은것으로 하여 상대편당사자가 응당 리행하게 된것까지 몰수하는것은 허위적인 행위를 한 량편당사자들에 대한 법적처리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허위적인 행위가 쌍방당사자들의 위법적인 의사에 기초한 사전공모로 이루어지는것만큼 그에 대한 법적처리에서도 쌍방당사자들에게 다같은 법적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그렇게 할 때에만 허위적인 행위에 참가한 량편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도록 자극합수 있다.

위법적인 의사로 공모하여 허위적인 행위를 한 량편당사자들중 한편 당사자만이 재 산몰수를 당하고 재산적손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를 철저히 가하지 못한것으로 된다.

몰수되는 재산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르며 거래에 참가한 당사자들모두의 재산이 몰수된다.

공화국민법에서는 법을 어기려는 위법적인 의사밑에 허위적인 행위를 한 당사자들에게 재산적제재를 가함으로써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면 자신들에게 법적제재가 가해져 재산적손해가 발생한다는것을 인식시키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극한다.

공화국민법은 이처럼 위법적인 민사행위들에 대하여 재산적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위법적인 민사행위를 한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그들의 잘못된 사상관점을 개조 하도록 추동한다.

우리는 허위적인 행위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리익, 상대편당사자들의 리익을 존중시하는 집단주의적미풍을 높이 발휘해나가며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해치는 위법적인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할것이다.